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확대〉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48호)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1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이수진의원안(의안번호 제2216448호)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1. 30.

다. 회 부 일 : 2026. 2. 2.

2. 서명옥의원안(의안번호 제2218114호)

가. 발 의 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6.

다. 회 부 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수진의원안(의안번호 제2216448호)

제안이유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남녀가 거의 동수임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는 현격히 차이가 있음. 즉,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임.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이며, 시·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은 각각 0% 및 3.1%로 매우 저조함.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 나.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지역구에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 라.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2. 서명옥의원안(의안번호 제221811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에 불과하였음. 또한, 지난 30여 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이었고, 기초단체장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3.1%에 그치는 실정으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6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전국단위 선거 시 정당의 여성추천 비율 등을 확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 시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시·도의원 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수: 제17대~제22대 총선》

(단위: 명)

대수	의원정수(지역구/비례)	여성의원 당선자 수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17대	299(243/56)	10	29	39(13.0%)
18대	299(245/54)	14	27	41(13.7%)
19대	300(246/54)	19	28	47(15.7%)
20대	300(253/47)	26	25	51(17.0%)
21대	300(253/47)	29	28	57(19.0%)
22대	300(254/46)	36	24	60(2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

☞ “여성할당제 도입 20년: 여성의원 총원패턴의 변화와 지속”(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내용 일부 발췌

이에 개정안들은 전국단위 선거 시 정당의 여성추천 비율 등을 확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수진의원안은 선거별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반면, 서명옥의원안은 같은 비율(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임.

《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

구분		현행	이수진의원안	서명옥의원안
여성후보자 추천비율 등 (법 제47조)	국회의원	-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 정당의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시·도의원	- 시·도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 시·도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국회의원지역구에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구·시·군의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	-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를 통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도권 정치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들은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들과 같이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 확대를 의무화하는 경우 정당이 가지고 있는 후보자 추천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군소 정당의 경우에는 개정안들에서 제시된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워 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정치적·사회적·구조적 차별 완화의 필요성과 함께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자유, 현실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서명옥의원안은 각 선거별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각각 별개의 선거로 보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선거를 합산한 전체 추천 후보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비율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있어 여성할당제의 도입 여부나 할당 비율 등은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 정치적·사회적·구조적 차별 완화의 필요성,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자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후보자 추천현실과 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참고: 조문대비표〉

현행	이수진의원안	서명옥의원안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생략)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지역구에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각각 그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 <삭제>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신 설>	<u>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u> ⑦ <u>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u>	<u>그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u>
제52조(등록무효) ① (생략) <신 설>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	제52조(등록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 후 여성후보자의 등록무효로 그 추천비율이 위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7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 ----- ----- -----또 는----- ----- ----- -----후보자등록 후----- -----	제52조(등록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 후 여성후보자의 등록무효로 그 추천비율이 위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 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 ④ (생략)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④ (생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⑤ 제52조제4항----- ----- -----.	
⑥ ~ ⑫ (생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 · ② (생략)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③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③ ~ ⑦ (현행과 같음)

第223條(當選訴訟) ①

-----제

52조 제1 항 · 제4 항

– 14 –